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송윤아 연구위원

요익

-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소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최근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계약자ㆍ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원보험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소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최근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계약자·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McCaran −Ferguson Act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함.1)
 - 1945년 제정된 McCaran-Ferguson Act는 Sherman Anti-trust Act나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와 같은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 적용하지 않고 (재)보험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규제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EU 집행위는 2010년 (재)보험산업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일괄제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경쟁법 적용제외 대상행위를 기존의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축소함.
 - 계속 존치하는 2개 유형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기준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삭제함 2)

¹⁾ Griffin, M. T., and Levin, A. J.(2007), "US Insurance and Reinsurance Industry Faces Scrutiny for Anticompetitive Practices", Federation of Regulatory Counsel Journal Vol. 18.

-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재)보험중개사의 수탁자 의무 위반과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각 주정부의 제소가 이어졌음.
 - (재)보험거래에서는 계약자, 원보험사, 재보험사, 재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특정행위가 고객의 이해와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³⁾
 - 보험 중개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 의하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4)
 - 적절한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수탁자 의무 (fiduciary duty)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
- 특히, 2007년 코네티컷 주정부가 재보험 중개사인 Guy Carpenter(이하 'GC'라 함)를 수탁자 의무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은 기존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임.5)
 - GC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재보험 중개사이자 Marsh의 자회사이며, 미국 내에서는 중소형 원 보험사를 위한 재보험 중개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코네티컷 주정부는 재보험 중개사인 GC가 수재사와 특수한 관계(쌍방대리와 공동소유)에 있고 이로 인해 고객(출재사)의 이해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 사실상 GC는 출재사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수재사의 언더라이터로서 수재사를 대신하여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결정하였음.
 - 또한 GC는 수재사 중 하나인 Excess Re의 공동소유자이며, 총괄매니저(general manager)로서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Excess Re 수입보험료의 6.75%를 수수료로 받음.

²⁾ Eithne McCarthy and Laura Stefanescu(2010),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for the Insurance Sector".

³⁾ 다음의 경우에 재보험 중개사와 출재사(고객)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① 보험중개 시 출재사를 대표하는 보험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익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를 수수하거나 중개한 계약에서 창출된 이익을 재보험사와 공유하거나 나누어 받는 행위 시; ②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③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재보험중개사와의 재재보험계약 중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④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 재재보험사와의 재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⑤ 동일위험에 대해 원보험과 재보험을 일괄 중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cbp.com.au/Portals/0/Newsletters/060310_AIDA%20Doc_Conflicts%20of%20Interest.pdf 참조.

⁴⁾ Wang, Wallace Hsin-Chun(2003), 「Reinsurance Regulation: A Comtemporary and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⁵⁾ State of Connecticut v. Guy Carpenter and Company, LLC and Excess Reinsurance Company, No. HHD-X03-CV-07-4033778-S.

- 동일위험에 대해 중개사가 출재사와 수재사 쌍방을 대리하거나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특수한 관계 가 있는 경우 중개사의 특정 행위 및 의사결정은 출재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중개사는 쌍방대리 사실 또는 재보험사와의 특수 관계에 대해 출재사에 사전 공개하고 출재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그러나, GC는 쌍방대리와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직접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Excess Re라는 재보험사의 공동소유자임을 고객인 출재사에 알리지 않음.

〈그림 1〉 재보험거래의 당사자



- 또한, 코네티컷 주 검찰은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이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는 대신 서로 경쟁하지 않고 GC가 정한 재보험 거래조건과 가격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이 50년 이상 출재사와 원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독점적 이윤을 누린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GC는 Facility라 불리는 다수의 재보험사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Facility내 재보험사들에게 재보험을 중개함.
 -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은 거래조건 및 요율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GC에 양도하는 대신 GC의 중개 물건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음.
 - GC는 더 낮은 요율을 받기 위해 공개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GC가 결정한 거래조건 및 요율로 Facility내 재보험사에 출재함.
 - 코네티컷 주정부의 수사 따르면 GC와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의 반경쟁적 영업행위로 인해 출재 사의 비용이 10∼40%까지 인상되었음.
 - GC는 Facility에 속하지 않는 재보험사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가격경쟁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C의 가격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출재사들도 자신들이 부당한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나아가, 재보험 중개사인 GC는 시장지배력과 재보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보험 거래조건 및 요율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

- 3011년 코네티컷 주정부는 GC와 Excess Re에 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한편, 2015년 말까지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개선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6)
 - 첫째, 재보험 중개 시 GC는 관련 재보험사와의 관계(소유, 대리 등)를 출재사에 밝혀야 함.
 - 둘째, GC가 공동 소유한 Facility에 재보험중개를 할 경우 GC는 해당 Facility로부터 받기로 예정 된 중개수수료와 기타 대가를 문서로 공개하고, 계약체결에 앞서 출재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셋째. GC는 Facility의 구조를 설명한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넷째, GC는 특정 재보험사를 선택·추천한 이유를 해당 고객에게 공개해야 함.
 - 다섯째, GC는 Facility내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의 재보험사들로부터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득하여야 함.
 - 여섯째, GC는 매해 13개 출재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 의 다른 재보험사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시장의 거래조건 및 요율이 Facility보다 더 낫다면, GC는 Facility에서 재보험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고려해야 함.
- ➡ 우리나라에서도 원보험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보험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보험중개사의 보수 지급 방식, 재보험 중개사와 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중개사와의 관계 등에서 기인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해야 함.
 - 또한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간 담합, 소수 의 시장지배 등 재보험거래 당사자간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함. kiqi

⁶⁾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http://www.ct.gov/ag/lib/ag/press releases/2011/013111guycarpenter.pdf 참조.